

미국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무과실보험의 중재에 관한 고찰 - 미국 뉴욕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o-Fault Arbitration in U.S.'s Automobile Insurance - Focus on the Case of New York State -

김 지 호*
Ji-Ho Kim

<목 차>

- I. 머리말
- II. 무과실보험의 중재
- III. 시사점
- IV. 맺음말

주제어 : 중재, 무과실보험, 무과실보험 중재, 보험중재, 선택적 중재합의

* 대한상사중재원 차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I. 머 리 말

오늘날 자동차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동차사고의 발생도 필연적이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인적, 물적피해를 수반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르게 된다.¹⁾ 즉 자동차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가해자의 과실, 손해와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소송에서 이러한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만일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인적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지연된다면 피해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운전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²⁾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의 과실책임에 관한 분쟁은 남는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미국 뉴욕주는 무과실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무과실보험(no-fault insurance)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대인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³⁾ 보험자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무과실보험이라 한다. 미국에서도 원칙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른다. 무과실보험은 이러한 보통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대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수정한 것이다.⁴⁾ 무과실보험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무과실보험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보험자간에는 보험금의 확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은 대체로 소액의 정형화된 분쟁이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관련되므로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높다. 이 점에서 뉴욕주 무과실보험법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하여 중재를 허용하는 경우 통상의 중재와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재를 원하더라도

1)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사고의 민사상 책임은 민법에 의한 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에 의한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과실책임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양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은 타인에 대한 대인사고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 한도에서 적용되는데, 과실책임주의가 완화되어 위험책임에 따른 준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었다. 박세민, 「자동차보험법론」, 세창출판사, 2003, p. 18.

2) 최준선, 「보험법·해상법」, 제4판, 삼성사, 2009, p. 282.

3) 우리나라에서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 또는 소유·사용·관리 중에 제3자의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배상하는 책임보험으로,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임의책임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보험·해상법」, 제8판, 박영사, 2008, p. 273.,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p. 395.

4) Safeco Inc. Co. of America v. Jamaica Water Supply Co. (2 Dept. 1981) 83 A.D.2d 427, 444 N.Y.S.2d 925, affirmed 57 N.Y.2d 994, 457 N.Y.S.2d 245, 443 N.E.2d 493.

소액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제도화된 중재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무과실보험법은 중재를 도입하면서도 선택적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중재와는 다른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뉴욕주의 무과실보험과 무과실보험 분쟁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무과실보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무과실보험 중재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II. 무과실보험의 중재

1. 무과실보험과 분쟁

(1) 무과실보험의 의의

무과실보험은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도인데, 광의의 의미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사고에서 자기의 과실에 관하여 면책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과실보험은 특히 미국 각 주의 자동차보험법에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실과 상관없이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러한 무과실보험 시스템은 1970년에서 1975년 사이에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당시 24개 주가 무과실보험을 도입하여 무과실보험법을 제정하였다.⁵⁾ 이 글에서 말하는 무과실보험은 협의의 의미에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인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의 비용에 대해 자신의 보험자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말한다.⁶⁾

미국의 각 주가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무과실보험을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이다.⁷⁾ 피해자는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자 입장에서도 과실과 관련된 과도한 소송을 피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아울러, 무과실보험의 도입을 통해 소액의 대인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법원에 다수 제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⁸⁾ 주 법원

5)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No-fault_insurance, 25 January 2012.

6) Louis B. Cristo, "Litigating the No-Fault Serious-Injury Threshold", 59 American Jurisprudence Trials 347, 1996, p. 59.

7) Lenox Hill Radiology MIA, P.C. v. American Transit Ins. Co. (2008), 19 Misc.3d 358, 851 N.Y.S.2d 861.

8) Louis B. Cristo, op. cit., p. 59.

들은 이런 취지로 제정된 무과실보험법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무과실보험법을 제정하기 전에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부담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실패하였고, 민사소송 체계는 고비용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법행위 소송의 결과도 종종 불공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근거와 소송증가를 고려하여 무과실보험법에 우호적으로 판결하고 있다.⁹⁾

미국에서 무과실보험을 채택한 가장 대표적인 주는 뉴욕주인데, 보험법 제51조에서 무과실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¹⁰⁾ 뉴욕주 보험법 제51조는 ‘종합자동차보험보상법’이라고 하며, ‘무과실보험법’이라고도 한다.¹¹⁾ 동 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규정하면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비용에 대해 개인당 최대 미화 50,000불까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과실보험법의 보상체계는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체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무과실보험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법리를 따르고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과실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과실보험에서는 가해자의 과실유무나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다.¹²⁾ 즉 보험자의 자동차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과실이나 피보험자의 책임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¹³⁾ 이 점에서 무과실보험법은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한다.¹⁴⁾ 법원은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차량 후드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가격하던 중 운전자가 차량을 진행함에 따라 후드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인정하였다.¹⁵⁾

둘째, 무과실보험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 대신에 보상범위와 보상액에 관하여 한도를 두고 있고,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 소송을 제한하기도 한다. 무과실보험은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무과실보험은 신체상 손

9) *Licari v. Elliott* (1982) 57 N.Y.2d 230, 455 N.Y.S.2d 570, 441 N.E.2d 1088, 33 A.L.R.4th 759

10) 제51조는 다시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101조는 제목(Title), 제5102조는 정의(Definitions), 제5103조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에 관한 권한; 필요한 추가 재정보증(Entitlement to first party benefits; additional financial security required), 제5104조는 대인상해에 대한 소구원인(Causes of action for personal injury), 제5105조는 보험자간의 해결(Settlement between insurers), 제5106조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공정한 해결(Fair claims settlement), 제5107조는 비거주 운전자에 대한 부보범위(Coverage for non-resident motorists), 제5108조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청구 제한(Limit on charges by providers of health services)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뉴욕주 보험법 제51조의 명칭은 법문에서 ‘Article 51 of the New York Insurance Law, also known as The No-Fault Law’라고 하여 별칭을 ‘무과실보험법’이라고 하고 있으며, 제5101조에서는 “This article shall be known and may be cited as the 「Comprehensive Motor Vehicle Insurance Reparations Act」”라고 하여 명칭이 ‘종합자동차보험보상법’이며 이 명칭으로 인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헌이나 미국중재협회 등의 자료에서는 ‘무과실보험법(No-fault law)’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이에 따른다.

12) 노일식, “NO-FAULT 자동차보험”, 「보험법연구」, 제3권, 보험법연구회편, 삼지원, 1999, p. 290.

13) *Liberty Mut. Ins. Co. v. State* (1978) 94 Misc.2d 676, 405 N.Y.S.2d 945.

14) *Donovan v. Rapid Ray's Printing & Copying Inc.* (1978) 93 Misc.2d 750, 403 N.Y.S.2d 407.

15) *Bamond v. Nationwide Mut. Ins. Co.* (2 Dept. 1980) 75 A.D.2d 812, 427 N.Y.S.2d 642.

해중 기본적인, 경제적 손해라는 제한된 범위의 손해에 관하여 신속하고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⁶⁾ 재산상의 손해는 전통적인 보험체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¹⁷⁾ 한편, 뉴욕주의 경우 중대한 손해가 아닌 신체상 손해는 무과실보험에 의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한된다.¹⁸⁾

뉴욕주 무과실보험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 보상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¹⁹⁾ 이에 의하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의 이용 또는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말하는데,²⁰⁾ 개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손해란 치료비 및 일실입금을 포함하여 개인당 최대 미화 50,000불까지의 손해를 의미한다.²¹⁾

셋째, 무과실보험에 의할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무과실보험은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기보험(first party insurance)이고, 책임보험(third party insurance)이 아니다.²²⁾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에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자가 관련되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무과실보험은 보험금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자를 가해자의 보험자에서 피해자의 보험자로 변경한다. 과실 있는 가해자의 보험자가 배상의무를 진다는 것은 보험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공통적인 위험이고, 이와 반대로 피해자의 보험자가 무과실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험자간에는 공통된 위험이므로, 보험자의 위험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양자간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무과실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 과실 또는 배상액이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의 보험자 또는 정부로부터 직접 신속하게 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무과실보험법의 근본적인 취지중 하나인 것이다.²³⁾

16) *Heitner v. Government Employees Inc. Co.* (1983) 118 Misc.2d 752, 461 N.Y.S.2d 195.

17) 노일석, 전계 논문, p. 295.

18) 미국 각 주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 정도가 다르다. 일부 주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오래건주, 온타리오주), 일부 주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되, 중대한 신체상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 소송권을 인정한다(뉴욕주, 미시간주). 노일석, 전계 논문, pp. 296-297.

19) N.Y. Ins. Law § 5103.

20) N.Y. Ins. Law § 5102(b). "First party benefits" means payments to reimburse a person for basic economic loss on account of personal injury arising out of the use or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

21) N.Y. Ins. Law § 5102(a). "Basic economic loss" means, up to fifty thousand dollars per person of the following combined item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section five thousand one hundred eight of this article:

(1) All necessary expenses incurred for: (i) medical, hospital ... (제1항 이하 생략) 동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비, 기타 간접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Loss of earnings from work ... up to two thousand dollars per month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accident causing the injury. (이하 생략)

22) 노일석, 전계 논문, p. 295.

23) Jeffrey F. Ghent, "Validity and Construction of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Plans", 42 American Law

넷째, 특히 뉴욕주의 무과실보험은 모든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강행적인 보험이다.²⁴⁾ 뉴욕주 무과실보험법은 뉴욕주에서 운영되는 모든 자동차의 책임보험증권에 피보험자에 대한 무과실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만일 보험증권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규정한 사항이 무과실보험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과실보험법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된다.²⁵⁾ 이러한 무과실보험법에 따라 뉴욕주에서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일실임금 등에 관하여 최대 미화 50,000불까지를 자신의 보험자 또는 주정부가 설립한 MVAIC²⁶⁾로부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2) 무과실보험 분쟁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증권 또는 무과실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보험금은 피해자가 사고사실과 비용에 관한 증거를 제공한 후 30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²⁷⁾ 보험자가 피해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해 30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면 무과실보험 분쟁이 발생한다. 대다수의 무과실보험 분쟁은 자동차사고 상해에서 치료비의 적절성에 관한 사실 판단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청구에 대해 치료행위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취해진 것인지, 또는 치료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주로 다투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사고 당시 보험증권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²⁸⁾ 타주 거주자에 대해 무과실보험법이 적용되는지,²⁹⁾ 보험자의 보험계약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³⁰⁾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인적대상에 해당하는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사고와 관련되었는지 등 무과실보험법의 적용대상 여부와 보험증권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도 분쟁의 대상이 되

Reports 3d. 229, 1972, p. 42.

24) 일부 주(켄터키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에 불법행위 소송과 무과실보험에 따른 구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25) N.Y. Ins. Law § 5103(h).

26) MVAIC는 뉴욕주 보험법 제52조(New York Insurance Law Article 52 also known as The 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Act)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무보험운전자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와 무과실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Y. Ins. Law §52, <http://www.mvaic.com>, 4 February 2012.

27) N.Y. Ins. Law § 5106(a).

28) Empire Mut. Ins. Co. v. Faulkner (3 Dept. 1976) 52 A.D.2d 668, 381 N.Y.S.2d 1008, appeal denied 39 N.Y.2d 710, 387 N.Y.S.2d 1025, 355 N.E.2d 307.

29) National Grange Mut. Ins. Co. v. Hing Wa Louie (1 Dept. 2007) 39 A.D.3d 293, 833 N.Y.S.2d 88., Ohio Cas. Group v. Avellini (1 Dept. 1976) 54 A.D.2d 632, 387 N.Y.S.2d 571, affirmed 43 N.Y.2d 701, 401 N.Y.S.2d 207, 372 N.E.2d 41.

30) Nassau Ins. Co. v. McMorris, 1977, 41 N.Y.2d 701, 395 N.Y.S.2d 149, 363 N.E.2d 700., All city Ins. Co. v. Robinson, 1976, 87 Misc.2d 634, 386 N.Y.S.2d 515., Banner Cas. Co. v. Fox, 1976, 86 Misc.2d 772, 383 N.Y.S.2d 1012.

고 있다.

무과실보험의 보험금청구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권리양도를 통해 의료기관은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실제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한 경우보다는 권리를 양도받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2008년에 미국중재협회에 접수된 무과실보험 중재 사건 중에서 피해자가 직접 중재를 신청한 사건은 전체사건 중에 2.5%에 불과하였던 반면, 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은 97.5%에 달하였다.³¹⁾

보험금청구자는 i) 법정의 보험금청구서³²⁾를 보험자에게 송부하였고, 보험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과 ii) 보험자가 30일 이내에 무과실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일응 정당한 보험금청구로 인정된다.³³⁾ 따라서, 보험금청구자가 이러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제시하면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보험자가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³⁴⁾ 보험금청구서에는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하여 치료가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사고상황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상해의 특징, 치료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³⁵⁾ 보험자는 보험금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거절을 통지하여야 한다.³⁶⁾ 보험자가 30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거절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대부분의 항변사유에 대하여 항변권이 배제된다.³⁷⁾ 만일 보험금청구자가 사기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고의적으로 치료비를 증액하여 청구하거나,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청구자를 상대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³⁸⁾ 이는 특히 보험자가 30일내에 지급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험자의 항변이

31) https://nysinsurance.adr.org/FAQ_public.jsp, 30 January 2012.

32) NYS Form NF-3.

33) *Advanced Tempromandibular Disorder & Dental Surgery ex rel. Lanskaya v. Progressive Northeastern Ins. Co.* (2010) 27 Misc.3d 436, 896 N.Y.S.2d 830.

34) Mitchell S. Lustig, Jill Lakin Schatz, "A Defense Lawyer's Guide to No-Fault Litigation in New York State", 79-OCT New York State Bar Journal 40, 2007, p.41.

35) *Interboro General Hosp. v. Allcity Ins. Co.* (2 Dept. 1989) 149 A.D.2d 569, 540 N.Y.S.2d 447, appeal dismissed 74 N.Y.2d 792, 545 N.Y.S.2d 107, 543 N.E.2d 750.

36) N.Y. Ins. Law §5106(a), 11 N.Y.C.R.R. §6-3.8(a)(1)

37) *State Farm Mut. Auto. Ins. Co. v. James M. Liguori, M.D., P.C.*, 2008, 2008 WL 5204468., *Westchester Medical Center v. Safeco Ins. Co. of America* (2 Dept. 2007) 40 A.D.3d 984, 837 N.Y.S.2d 207., *Presbyterian Hosp. in the City of N.Y. v. MD Cas. Co.* (1997) 90 N.Y.2d 274, 660 N.Y.S.2d 536.

38) *State Farm Mut. Auto. Ins. Co. v. James M. Liguori, M.D., P.C.* (2008) 2008 WL 5204468.

제한되는 경우에 유용한데, 이 경우 보험자는 일단 무과실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기를 이유로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기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다.

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해 매월 2%의 이자가 부과되고, 보험금청구자가 분쟁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³⁹⁾

2. 무과실보험의 중재신청과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절차

(1) 개요

대다수의 무과실보험 분쟁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관련된 소액의 정형화된 분쟁이다. 이러한 분쟁은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높다. 이 경우 중재가 유력한 분쟁해결방법이 되는데, 뉴욕주는 무과실보험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법률에 의하여 중재를 허용하는 경우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무과실보험법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무과실보험 분쟁에 대해 보험금청구자가 소송과 중재중에서 하나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중재절차는 소액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무과실보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중재는 전통적인 중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중재를 개시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보험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당사자에게 중재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보험금청구자는 중재 또는 소송중에서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합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소위 선택적 중재조항의 형식을 띄고 있다. 셋째,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다루어지는데 반해, 무과실보험 중재의 경우 재심중재를 도입하고 있다. 재심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무과실보험 중재에는 2단계의 이의제기절차가 존재한다. 넷째, 재심중재의 중재판정금액이 미화 5,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과실보험 중재는 통상의 중재와 달리 독특한 법적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선택적 중재신청권

뉴욕주 무과실보험법은 무과실보험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중재 또는 소송중에서 하

39) N.Y. Ins. Law §5106(a).

나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⁴⁰⁾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무과실보험법 제5106조 (b)항은 “모든 보험자는 신청인에게 피보험자의 무과실보험금 …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보험국장이 정하거나 또는 승인한 약식절차에 따른 중재에 회부할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¹⁾ 동 조는 보험자에게 신청인이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험금청구자인 신청인은 중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무과실보험법은 신청인에게 중재로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중재에 배타적인 관할을 인정하여 소송을 배제한다거나,⁴²⁾ 중재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⁴³⁾ 따라서, 보험금청구자는 중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무과실보험법이 선택적 중재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법원은 무과실보험법의 목적중 하나는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경감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당사자에게 일정한 분쟁을 강행적이고, 구속적인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하면서,⁴⁴⁾ 무과실보험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배상청구소송은 적을수록 좋다는 공공정책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⁴⁵⁾ 무과실보험법이 보험금청구자에게만 선택적 중재신청권을 허용한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무과실보험법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분류된 일정한 분쟁에 대하여 보험자를 배제하고 피보험자에 대해서만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판결하였다.⁴⁶⁾

무과실보험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에는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의료기관도 포함된다.⁴⁷⁾ 신청인에게 중재신청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자에는 뉴욕주에서 자동차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 자

40) Hospital for Joint Diseases v. Allstate Ins. Co. (2 Dept. 2004) 5 A.D.3d 441, 773 N.Y.S.2d 427.

41) N.Y. Ins. Law §5106(b) “Every insurer shall provide a claimant with the option of submitting any dispute involving the insurer’s liability to pay first party benefits, or additional first party benefits, the amount thereof or any other matter which may arise pursuant to subsection (a) hereof to arbitration pursuant to simplified procedures to be promulgated or approved by the superintendent.”

42) Greenspan v. Allstate Ins. Co. (1996) 937 F.Supp. 288, Chapman v. American Motorists Ins. Co., 1976, 88 Misc.2d 115, 388 N.Y.S.2d 80.

43) Zurich Ins. Co. v. Evans, 1977, 89 Misc.2d 717, 392 N.Y.S.2d 564.

44) Country-Wide Ins. Co. v. Harnett, 1977, 426 F.Supp. 1030, affirmed 97 S.Ct. 2644, 431 U.S. 934, 53 L.Ed.2d 252.

45) Furstenburg v. Aetna Cas. & Sur. Co. (1 Dept. 1979) 67 A.D.2d 580, 415 N.Y.S.2d 849, reversed on other grounds 49 N.Y.2d 757, 426 N.Y.S.2d 465, 403 N.E.2d 170.

46) Country-Wide Ins. Co. v. Harnett, 1977, 426 F.Supp. 1030, affirmed 97 S.Ct. 2644, 431 U.S. 934, 53 L.Ed.2d 252.

47) Rosenblum v. Government Emp. Ins. Co., 1977, 41 N.Y.2d 966, 394 N.Y.S.2d 879, 363 N.E.2d 585.

기보험자, MVAIC를 포함한 모든 보험자가 해당된다.⁴⁸⁾ 무과실보험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부가적인 피보험자의 보험금, 이로 인한 금액 또는 (a)항에 따라 발생하는 다른 문제⁴⁹⁾와 관련된 분쟁’이다.⁵⁰⁾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은 보험자로 하여금 중재선택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무과실보험법 규정은 무과실보험법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모든 분쟁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중재조항이라고 판시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다.⁵¹⁾

보험금청구자는 중재와 소송중에서 하나의 분쟁해결절차만을 선택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면 다른 절차를 다시 선택할 수 없다. 만일 당사자가 무과실보험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⁵²⁾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⁵³⁾ 당사자가 일단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인의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고,⁵⁴⁾ 중재에서 제기되어야 하였으나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실제문제에 관하여 다시 사법적 결정을 구할 수 없다.⁵⁵⁾ 따라서, 임금손실에 관하여 무과실보험 중재를 선택한 당사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청구를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고,⁵⁶⁾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판정부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중재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청구를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⁵⁷⁾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중재판정에는 최종적 구속력이 인정되고,⁵⁸⁾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하며,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어 쟁점효가 발생한다.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중재인이 신청인의 청구전부를 기각한 경우 이러한 중재인의 결정은 본안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으로 이후의 소송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다룰 수 없다.⁵⁹⁾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보험자는 중재판정문 발송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금액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신청인은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로 중재판정을 판결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⁶⁰⁾ 보험자가 판정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인은 뉴욕

48) 11 N.Y.C.R.R. §65-4.1

49) (a)항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지급기한(30일), 이자, 변호사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N.Y. Ins. Law §5106(a).

50) N.Y. Ins. Law §5106(b).

51) *Ryder Truck Lines, Inc. v. Maiorano*, 1978, 44 N.Y.2d 364, 405 N.Y.S.2d 666, 376 N.E.2d 1311.

52) *Zurich Ins. Co. v. Evans*, 1977, 89 Misc.2d 717, 392 N.Y.S.2d 564

53) *Rockaway Blvd. Medical P.C. v. Progressive Ins.* (2003) 2003 WL 21283606

54) *Slavin v. Benson* (1980) 493 F.Supp. 32.

55) *Berent v. Erie County* (4 Dept. 1982) 86 A.D.2d 764, 448 N.Y.S.2d 282.

56) *Cockett v. Nationwide Mut. Ins. Co.*, 1988, 143 Misc.2d 249, 543 N.Y.S.2d 607.

57) *Roggio v. Nationwide Mut. Ins. Co.* (3 Dept. 1985) 106 A.D.2d 3, 484 N.Y.S.2d 382, affirmed 66 N.Y.2d 260, 496 N.Y.S.2d 404, 487 N.E.2d 261.

58) N.Y. Ins. Law §5106(c).

59) *Kilduff v. Donna Oil Corp.* (2 Dept. 1980) 74 A.D.2d 562, 424 N.Y.S.2d 282.

60) 11 N.Y.C.R.R. § 65-4.5(y),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w.

주 보험국 재산과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⁶¹⁾ 보험자가 중재판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무과실보험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재에서의 결정은 확정적이고,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쟁점효가 발생하므로 중재절차에서 제기된 쟁점과 동일한 쟁점을 소송에서 다시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다.⁶²⁾

(3) 재심중재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원에서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청구의 단계에서 집행거부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⁶³⁾ 중재판정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실효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된다. 무과실보험 중재에서는 법원의 사법심사에 앞서 중재판정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재심중재⁶⁴⁾를 두고 있다. 재심중재판정은 다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데,⁶⁵⁾ 이 점에서 무과실보험 중재는 재심중재에 의한 심사와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라는 2단계 이의제기절차를 두고 있다. 재심중재는 필요한 절차로서 당사자가 재심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⁶⁶⁾ 무과실보험 중재에서 재심중재라는 이의제기절차를 추가로 둔 것은 무과실보험 중재의 경우 양당사자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험자에게 의무적으로 중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무과실보험 중재절차는 신속절차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사후적인 심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심중재에서의 심사범위는 통상적인 중재판정에서의 심사범위보다 넓다.⁶⁷⁾ 재심중재에서는 뉴욕주법상 중재판정취소 사유인 i) 중재판정에 있어서 부패, 사기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ii) 중재인의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iii) 중재인의 권한 남용이 있는 경우의 사유⁶⁸⁾이외에도 무과실보험법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유인 iv) 피보험자의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증권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경우, v) 피보험자의 부가적인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증권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경우, vi) 중재판정에 법 적용상의 과실(incorrect as matter of law)이 있는 경우,⁶⁹⁾ vii)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 무과실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경우에도 중재판정을 취소

61) https://nysinsurance.adr.org/FAQ_public.jsp, 30 January 2012.

62) *Martin v. Geico Direct Ins.* (2 Dept. 2006) 31 A.D.3d 505, 818 N.Y.S.2d 265.

63)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1, p. 210.

64) 원문은 ‘master arbitration’인데, 다시 중재를 한다는 점에서 ‘재심중재’라 번역하였다.

65) N.Y. Ins. Law §5106(c), 11 N.Y.C.R.R. §65-4.10.

66) *Custen v. General Acc. Fire and Life Ins. Co.* (2 Dept. 1987) 126 A.D.2d 256, 513 N.Y.S.2d 453. *Griffith v. Home Indem. Co.* (1 Dept. 1982) 84 A.D.2d 332, 446 N.Y.S.2d 55. *Lampasona v. Prudential Property & Cas. Ins. Co.*, 1981, 111 Misc.2d 623, 444 N.Y.S.2d 520.

67) N.Y. Ins. Law §5106(c).

68) N.Y. C.P.L.R. §75. 뉴욕주에서 중재판정취소 사유는 민사집행법규칙(Civil Practice Law and Rules)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사유인 ‘제75조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7511(b)(1)(iv)]’는 무과실보험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N.Y.C.R.R. §65-4.10(a)(1).

69) 중재절차에서의 과실과 사실판단의 과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N.Y.C.R.R. §65-4.10(a)(4).

또는 수정할 수 있다.⁷⁰⁾

재심중재에서 중재인의 역할은 원중재인이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판정에 이르렀는지, 그 결정이 법률적인 문제로서 자의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다거나, 부정확하지 않은지, 보험증권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였는지, 또는 중재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해당 문제를 심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⁷¹⁾ 재심중재인은 원중재인의 증거채부, 진료기록의 신뢰성 평가, 독자적인 사실관계 판단과 같은 확정된 사실관계는 심사할 수 없으므로,⁷²⁾ 만일 재심중재의 중재인이 절차적, 사실적 문제에 대하여 원중재판정과 다른 판단을 기초로 원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 된다.⁷³⁾

재심중재에서 중재인은 통상적인 중재에서는 중재판정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중재판정에서 법 적용상의 과실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심사권한을 갖는다.⁷⁴⁾⁷⁵⁾ 법 적용상의 과실에는 중재판정이 충분한 증거나 또는 다른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지 심사할 권한을 포함한다.⁷⁶⁾ 재심중재인은 원중재인의 판정에 대한 근거로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법률문제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⁷⁷⁾ 법원은 재심중재인의 법 적용상의 과실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반드시 정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의 사법심사에서 정당한 것으로 지지되어야 한다고 하여 재심중재인의 판단권한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⁷⁸⁾

재심중재인의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⁷⁹⁾ 이때 이의제기 절차는 통상의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와 동일하다. 재심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범위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⁸⁰⁾ 보험자는 중재를 수락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적 심

70) 11 N.Y.C.R.R. §65-4.10(a).

71) State Farm Mut. Auto. Ins. Co. v. Becker, 1983, 118 Misc.2d 806, 461 N.Y.S.2d 675. Petrofsky v. Allstate Ins. Co., 1981, 54 N.Y.2d 207, 445 N.Y.S.2d 77, 429 N.E.2d 755.

72) Petrofsky v. Allstate Ins. Co., 1981, 54 N.Y.2d 207, 445 N.Y.S.2d 77, 429 N.E.2d 755. Owens v. Northwestern Nat. Ins. Co. (3d Dep't 1986) 116 A.D.2d 784, 496 N.Y.S.2d 838.

73) Smith v. Firemen's Ins. Co., 1982, 55 N.Y.2d 224, 448 N.Y.S.2d 444, 433 N.E.2d 509.

74) Country-Wide Ins. Co. v. Zablocki (1 Dept. 1999) 257 A.D.2d 506, 684 N.Y.S.2d 229, leave to appeal denied 93 N.Y.2d 809, 694 N.Y.S.2d 631, 716 N.E.2d 696. Smith v. Firemen's Ins. Co. (3 Dept. 1981) 80 A.D.2d 702, 436 N.Y.S.2d 467, affirmed 55 N.Y.2d 224, 448 N.Y.S.2d 444, 433 N.E.2d 509. Pierre v. General Acc. Ins., 1982, 117 Misc.2d 88, 457 N.Y.S.2d 376, affirmed 100 A.D.2d 705, 474 N.Y.S.2d 622, appeal denied 63 N.Y.2d 601, 479 N.Y.S.2d 1027, 468 N.E.2d 711.

75) 미국에서는 중재판정에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 등에 관하여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법의 무시 (manifest disregard of law)'가 없는 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 관례에 의해 확립되어 있다. 목영준, 전게서, p. 213., 양병희외 8인, 「주식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 2006, p. 198.

76) Pierre v. General Acc. Ins., 1982, 117 Misc.2d 88, 457 N.Y.S.2d 376, affirmed 100 A.D.2d 705, 474 N.Y.S.2d 622, appeal denied 63 N.Y.2d 601, 479 N.Y.S.2d 1027, 468 N.E.2d 711.

77) Ingber v. Statewide Ins. Co. (2 Dept. 1983) 97 A.D.2d 397, 467 N.Y.S.2d 221.

78) Liberty Mut. Ins. Co. v. Spine Americare Medical, P.C., 294 A.D.2d 574, 743 N.Y.S.2d 144 (2d Dep't 2002).

79) N.Y. Ins. Law §5106(c), 11 N.Y.C.R.R. §65-4.10(h).

80) Aetna Life & Cas. Co. v. Duthie (4 Dept. 1985) 107 A.D.2d 1009, 486 N.Y.S.2d 537, appeal

사기준은 자발적인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보다는 엄격하여야 하고,⁸¹⁾ 중재인의 권한초과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는 중재인의 결정을 지지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분석에까지 확장된다⁸²⁾고 하여 통상의 중재판정보다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4) 새로운 소제기권

무과실보험 중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재심중재에서 중재판정금액이 미화 5,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재판을 위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할 수 있다.⁸³⁾

새로운 소제기권은 보험자와 보험금청구자 모두에게 주어진다. 처음부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므로 양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수용할 수도 있고,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⁸⁴⁾ 새로운 소제기권은 재심중재에서 중재판정금액이 미화 5,000불 이상인 경우에 허용되므로 당사자간의 분쟁금액이 사실상 미화 5,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심중재에서 금전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소제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⁸⁵⁾ 마찬가지로,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이 미화 5,000불을 초과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재심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재심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재심중재인이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허락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금전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⁸⁶⁾

당사자에게 새로운 소제기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평등한 보호 위반여부가 문제되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공익목적과 합리적 근거를 인정하면서, 적법절차나 평등한 보호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⁸⁷⁾ 피보험자가 중재인의 결정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보험자는 재심중재인의 판정금액이 미화 5,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평등한 보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보험자는 처음부터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반면, 보험자에게는 이러한 선택권이 없었고, 또한 이러한 차이는 경미

dismissed 65 N.Y.2d 898, 493 N.Y.S.2d 312, 482 N.E.2d 1228.

81) *Furstenberg v. Allstate Ins. Co.*, 1980, 49 N.Y.2d 757, 426 N.Y.S.2d 465, 403 N.E.2d 170.

82) *Cady v. Aetna Life & Cas. Co.* (3 Dept. 1983) 96 A.D.2d 967, 466 N.Y.S.2d 850, appeal granted 61 N.Y.2d 606, 474 N.Y.S.2d 1025, 462 N.E.2d 1203, affirmed 61 N.Y.2d 594, 475 N.Y.S.2d 362, 463 N.E.2d 1214., *Mott v. State Farm Ins. Co.* (3 Dept. 1980) 77 A.D.2d 488, 434 N.Y.S.2d 824, reversed on other grounds 55 N.Y.2d 224, 448 N.Y.S.2d 444, 433 N.E.2d 509.

83) N.Y. Ins. Law §5106(c).

84) *Utica Mut. Ins. Co. v. Bernino* (3 Dept. 1982) 88 A.D.2d 680, 450 N.Y.S.2d 911.

85) *Green v. Liberty Mut. Ins. Co. Trust* (2 Dept. 2005) 16 A.D.3d 457, 791 N.Y.S.2d 630, leave to appeal dismissed 5 N.Y.3d 823, 804 N.Y.S.2d 35, 837 N.E.2d 734.

86) *General Acc. Fire and Life Ins. Co. v. Avlonitis* (2 Dept. 1989) 156 A.D.2d 424, 548 N.Y.S.2d 543.

87) *Green v. Liberty Mut. Ins. Co. Trust* (2 Dept. 2005) 16 A.D.3d 457, 791 N.Y.S.2d 630, leave to appeal dismissed 5 N.Y.3d 823, 804 N.Y.S.2d 35, 837 N.E.2d 734.

한 것이라고 하면서 평등한 보호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⁸⁸⁾

당사자가 새로이 소를 제기하면 중재판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중재판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중재판정에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⁸⁹⁾

3. 무과실보험의 중재절차

(1) 개요

대다수의 무과실보험 분쟁은 보험자와 의료기관간에 치료비의 적절성에 관한 미화 2,000불 이하의 분쟁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과실보험법은 소송 또는 중재 중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재의 경우 특히 소액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무과실보험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뉴욕주 보험국장이 중재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⁹⁰⁾ 미국중재협회가 1973년부터 뉴욕주 보험국으로부터 중재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무과실보험 중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⁹¹⁾ 중재절차는 뉴욕주 보험국에서 제정한 무과실보험법 시행규칙⁹²⁾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도 무과실보험 중재에 관한 중재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무과실보험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무과실보험 중재는 미국중재협회가 뉴욕주 보험국을 대행하여 중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재수행에 관하여 뉴욕주 보험국의 감독적 역할이 필요하고, 중재절차에는 이러한 뉴욕주 보험국의 감독적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무과실보험 중재의 중재절차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조정전치주의

무과실보험 중재에서는 중재절차개시 전에 먼저 조정을 통하여 분쟁해결을 시도한다. 뉴욕주는 1999년에 무과실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사건은 먼저 조정센터로 회부된다.⁹³⁾ 조정센터는 중재신

88) Booth v. Hartford Ins. Group, 1982, 531 F.Supp. 481.

89) Progressive Ins. Co. v. Strough (4 Dept. 2008) 55 A.D.3d 1402, 865 N.Y.S.2d 439.

90) N.Y. Ins. Law §5106(c), 11 N.Y.C.R.R. §65-4.2(a)(3).

91) AAA, "News from the AAA's New York State Auto Insurance ADR Center", No-Fault Notes, Vol. 2, 2011.

92) 이 규칙은 '뉴욕주 보험국의 규칙 제68호(New York State Insurance Department Regulation No.68)'로 '종합자동차보험보상법의 시행규칙(Regulation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Motor Vehicle Insurance Reparations Act)'이다. '종합자동차보험보상법'을 '무과실보험법'으로 지칭하기로 하였으므로 동 규칙을 '무과실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무과실보험법 시행규칙에는 4개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68-D(Regulation 68-D, 11 N.Y.C.R.R. §65-4)가 중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 무과실보험법 시행규칙은 뉴욕주 보험국의 규칙 제68-D호(Regulation 68-D)를 의미한다.

청서를 검토한 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조정인을 선정한다. 이때 조정인은 미국중재협회의 직원중에서 선정된다. 조정인은 서류를 검토한 후 이메일, 팩스, 전화, 서신을 통하여 합의해결을 시도하는데, 조정인은 증거의 유용성과 중재시의 승소가가능성을 평가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한다.⁹⁴⁾ 무과실보험법 시행규칙은 조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험자로 하여금 클레임 사무실에 조정해결권한이 있는 책임자를 지명하고, 이를 미국중재협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⁹⁵⁾ 조정인은 통지받은 보험자의 책임자와 연락을 하여 합의해결을 시도하므로 조정을 통한 해결의 실효성과 신속성이 증가한다. 조정은 60일내에 이루어지며, 이 기간내에 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로 회부된다.⁹⁶⁾ 미국중재협회는 2010년에 67,000건의 무과실보험 중재사건을 접수하였는데, 그 중 약 50%인 34,000건이 조정으로 해결되었고, 조정에서 평균처리기간은 50일이었다.⁹⁷⁾

(3) 중재절차의 개시

보험금청구자는 보험자의 지급거절서, 지급거절에 반대하는 이유, 청구비용의 상세한 명세와 계산, 보험청구서를 보험자에게 제출한 날짜를 기재하여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⁹⁸⁾ 중재신청서 서식은 실무적으로 두 개의 서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하나는 보험금청구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거절서⁹⁹⁾를 발송한 경우 그 지급거절서에는 1페이지에 지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2, 3페이지는 중재신청서로써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 신청인은 이 서식의 빈칸에 모두 기재하여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자가 지급거절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중재협회의 무과실보험 중재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작성한다. 중재신청서에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 즉 치료비 청구서, 경찰보고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추가적인 서류제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¹⁰⁰⁾ 미국중재협회는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내에 중재신청의 접수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이러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¹⁰¹⁾ 한편, 미국중재협회는 당사자 접근의 편의성과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전자사건폴더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서류없는 절차진행이 가능하다.¹⁰²⁾ 당사자는 전자사건폴더를 통해 중재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할

93) 11 N.Y.C.R.R. §65-4.2(b)(2)(i).

94) https://nysinsurance.adr.org/FAQ_public.jsp, 30 January 2012.

95) 11 N.Y.C.R.R. §65-4.2(b)(2)(ii).

96) 11 N.Y.C.R.R. §65-4.2(b)(2)(iii), §65-4.2(b)(5).

97) AAA, "News from the AAA's New York State Auto Insurance ADR Center", No-Fault Notes, Vol. 2, 2011.

98) 11 N.Y.C.R.R. §65-4.2(b)(1)(i).

99) NYS Form NF-10.

100) 11 N.Y.C.R.R. §65-4.2(b)(3)(i).

101) 11 N.Y.C.R.R. §65-4.2(b)(3)(ii).

102) https://nysinsurance.adr.org/FAQ_public.jsp, 30 January 2012. 미국중재협회는 무과실보험 중재에서 신

수 있고, 사건진행상황 및 심리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송달 없이도 중재인은 전자사건폴더에 접속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중재판정문도 이를 통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4) 신속절차

무과실보험 중재에서는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 양당사자의 서류제출 시기가 제한되고,¹⁰³⁾ 중재인은 사무국이 1인을 지정하며,¹⁰⁴⁾ 중재심리는 중재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30일내에 개최되어야 하고,¹⁰⁵⁾ 중재인은 심리종결일로부터 30일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¹⁰⁶⁾ 만일 당사자가 심리기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2회 연기시부터는 미화 50불의 심리기일연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¹⁰⁷⁾ 이와 같이 무과실보험 중재는 신속한 절차진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중재협회에서 중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0일로 소송을 통해서서는 720일이 소요되는데 비해 매우 신속하다.

무과실보험 중재에서는 절차전반에 대하여 신속성을 기하면서도 여기에 더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심리제도와 특별신속중재(special expedited arbitration)를 도입하고 있다. 분쟁금액이 미화 2,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중재인의 재량으로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¹⁰⁸⁾ 당사자는 서면심리의 통지를 수령하면 30일내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두 가지 경우, 즉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통지가 시기에 늦었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경우와 해당 보험자가 책임있는 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특별신속중재가 적용된다.¹⁰⁹⁾ 특별신속중재는 서면심리로 진행되고,¹¹⁰⁾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모든 서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¹¹¹⁾ 피신청인은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10일내에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답변하여야 하며,¹¹²⁾ 중재인은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내에 판정하여야 한다.¹¹³⁾ 중재인은 별도로 구성된 특별신속중재인단 중에서 선정된다.¹¹⁴⁾

속성을 기하고 당사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사건폴더(ECF, Electronic Case Folder)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사건폴더 시스템은 당사자와 중재인이 심리일정, 사건정보, 사건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파일저장시스템으로 미국중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전자사건폴더 시스템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사자는 서류의 제출, 저장, 열람이 가능하고, 중재인은 별도의 서류전달 없이 전자사건폴더에 접속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사무국은 전자사건폴더를 통해 사건유형을 분류하고, 진행상황 및 심리일정을 안내, 관리할 수 있다.

103) 11 N.Y.C.R.R. §65-4.2(b)(1)(i), §65-4.2(b)(3)(ii).

104) 11 N.Y.C.R.R. §65-4.5(f).

105) 11 N.Y.C.R.R. §65-4.5(i)(1).

106) 11 N.Y.C.R.R. §65-4.5(r),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q.

107) 11 N.Y.C.R.R. §65-4.5(j),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i.

108) 11 N.Y.C.R.R. §65-4.5(a),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a.

109) 11 N.Y.C.R.R. §65-4.5(b)(1).

110) 11 N.Y.C.R.R. §65-4.5(b)(7).

111) 11 N.Y.C.R.R. §65-4.5(b)(3).

112) 11 N.Y.C.R.R. §65-4.5(b)(6).

(5) 중재인 선정

무과실보험 중재에서 중재인은 전문성을 지닌 소수의 상임중재인이 중재인이 된다. 무과실보험 중재인이 되기 위해서는 뉴욕주에서 실무법률가 자격이 있고,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어야 한다.¹¹³⁾ 중재인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는 공정성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에 관해 선서할 의무가 있다.¹¹⁴⁾ 뉴욕주 보험국에 의해 별도로 설치된 무과실보험 중재인 심사위원회¹¹⁵⁾는 후보자에 대해 무과실보험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여부를 심사한 후 뉴욕주 보험국장에게 적정 후보자를 권고하고, 뉴욕주 보험국장이 최종적으로 중재인을 임명한다.¹¹⁶⁾ 중재인은 임명된 기간 동안 보험자와 실무적 또는 전문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¹¹⁷⁾ 뉴욕주 보험국장은 미국중재협회에 중재인 명단을 통보하고,¹¹⁸⁾ 미국중재협회는 중재인과 1년 단위로 연간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중재사건별로 미국중재협회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¹¹⁹⁾

중재결과에 관하여 재정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거나 또는 편견을 가진 사람은 중재에서 중재인이 될 수 없다.¹²⁰⁾ 중재인의 공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미국중재협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미국중재협회는 뉴욕주 보험국과 협의를 거쳐 15일 이내에 중재인의 부적격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부적격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미국중재협회가 다른 중재인을 선정한다.¹²¹⁾

(6) 보험자의 비용부담

무과실보험 중재에서 조정비용과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뉴욕주 보험자가 부담한다.¹²²⁾ 보험금청구자인 신청인은 중재신청시에 미화 40불의 신청요금을 납부하고,¹²³⁾ 이후에는

113) 11 N.Y.C.R.R. §65-4.5(b)(8).

114) 11 N.Y.C.R.R. §65-4.5(b)(9).

115) 11 N.Y.C.R.R. §65-4.5(d)(2).

116) 11 N.Y.C.R.R. §65-4.5(d)(3),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c.3.

117) 11 N.Y.C.R.R. §65-4.5(d)(1).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c.1. 무과실보험 중재인 심사위원회(No-Fault Arbitrator Screening Committee)는 뉴욕주 보험국장이 임명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뉴욕주에서 개최되는 심리를 담당할 무과실보험 중재인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선정된 중재인의 업무수행을 검토하고, 중재인의 선정과 해임에 관하여 보험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뉴욕변호사협회에서 1인, 뉴욕주소송변호사협회에서 1인, 무과실보험에 관한 선택적 중재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보험산업계 대표 2인, 지정기관의 투표권 없는 대표 1인, 보험국의 투표권 없는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118) 11 N.Y.C.R.R. §65-4.5(d)(2)(3),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c.1, c.3.

119) 11 N.Y.C.R.R. §65-4.5(d)(4),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c.4.

120) 11 N.Y.C.R.R. §65-4.5(d)(3),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c.3.

121) 11 N.Y.C.R.R. §65-4.5(f),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e.

122) 11 N.Y.C.R.R. §65-4.5(d)(4),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f.

123) 11 N.Y.C.R.R. §65-4.5(g),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f.

124) 11 N.Y.C.R.R. §65-4.2.(c)(1), 11 N.Y.C.R.R. §65-4.5(aa)(1),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y.

125) 11 N.Y.C.R.R. §65-4.2.(b)(1)(iii).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만일 신청인이 중재판정에서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납부한 신청요금 전부를 보험자로부터 돌려받는다.¹²⁶⁾ 조정 또는 중재에 소요된 최종비용은 뉴욕주 보험자들이 미국중재협회에 지급한다. 미국중재협회는 매 6개월마다 전체예상경비를 추산하여 전년도에 보험자가 피신청인으로 지정된 비율에 따라 각 보험자별로 비용을 배정한 후에 보험자별로 대금청구서를 보낸다. 보험자는 청구서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중재협회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¹²⁷⁾ 최종적으로 미국중재협회는 매년 4월까지 전년도 연말까지의 실제경비를 산정한 후 무과실보험에 관한 선택적 중재자문위원회¹²⁸⁾의 심사와 보험국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비용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에 관하여 정산한다.¹²⁹⁾

<표1. 중재비용계산 예시¹³⁰⁾>

(1)	1년 동안 종결된 총 중재사건 수	30,000건
(2)	중재절차에서 A 보험자가 피신청인으로 지정된 건수	1,250건
(3)	보험자 A의 산정 비율 = (2)/(1)	4.167%
(4)	수령한 요금을 뺀 실 중재경비	\$2,500,000
(5)	보험자 A의 실 경비 = (3)*(4)	\$104,175
(6)	보험자 A의 추정 비용	\$102,000
(7)	보험자 A의 추가 또는 환급비용 = (5)-(6)	\$2,175

Ⅲ. 시사점

뉴욕주의 무과실보험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무과실보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절차를 신속절차로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신속중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로 재심중재를 추가로

126) 11 N.Y.C.R.R. §65-4.2.(b)(1)(iii).

127) 11 N.Y.C.R.R. §65-4.2.(c)(2), 11 N.Y.C.R.R. §65-4.5(aa)(2),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y.2.

128) 무과실보험에 관한 선택적 중재자문위원회(No-Fault Optional Arbitration Advisory Committee)는 중재기관의 중재절차에 대한 운영 및 소요경비 검토를 위하여 뉴욕주 보험국장이 12명의 자문위원을 임명하는데, 4인 이상은 보험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11 N.Y.C.R.R. §65-4.2.(a)(4)

129) 11 N.Y.C.R.R. §65-4.2.(c)(3),(4), 11 N.Y.C.R.R. §65-4.5(aa)(3),(4),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y.3.

130) 조정비용의 계산방식도 중재비용의 계산방식과 동일하다. 11 N.Y.C.R.R. §65-4.2.(c)(4), 11 N.Y.C.R.R. §65-4.5(aa)(4).

두고 있고, 중재판정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운 소제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과실보험 중재를 우리나라에 곧바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과실보험 자체가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보험체계이고,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에 있어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책임보험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무과실보험 자체의 도입이 쉽지 않다.¹³¹⁾ 더욱이, 무과실보험 중재는 무과실보험 분쟁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고, 이러한 무과실보험 중재의 독특한 매커니즘은 통상적인 중재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어 함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¹³²⁾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양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¹³³⁾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뉴욕주는 기본적으로 분쟁해결방법이 조정인가 중재인가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분쟁을 포함한 금융분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뉴욕주는 무과실자동차보험이라는 독특하고 제한된 범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뉴욕주의 무과실보험 중재를 바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고, 현실에 맞지도 않는다.

그러나, 좀 더 폭을 넓혀 살펴보면 무과실보험 중재를 참고하여 일정한 분야의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분쟁, 소비자분쟁, 하도급분쟁, 가맹사업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법령에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절차에서는 조정인이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면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고, 제3자가 판단을 하여 결정을 내리는 절차는 소송 또는 중재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하고, 제3자의 판정이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일정한 범위의 분쟁에 대해서는 뉴욕주의 무과실보험법과 같이 법률에 의한 중재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뉴욕주 무과실보험법이 선택적 중재신청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논란에도 일응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과실보험법의 선택적 중재신청권은 보험금청구자에게만 인정되는 편면적 선택권이라는 점에서 쌍방에 선택권이 있는 선택적 중재합의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중재신청권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선택적 중재합의의 무효론의 논거를 약화시키

131) 노일석, 전제 논문, p. 327.

13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38조.

1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5조.

고, 유효론의 입장에 더 큰 힘을 실어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여부에만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선택적 중재합의가 유효한 경우 법리적 구성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그다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경우 뉴욕주 법원의 선택적 중재신청권에 관한 법리 구성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선택의 효과와 관련하여 뉴욕주 법원은 당사자가 중재 또는 소송 중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면 다른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가 어느 절차를 선택하면 소제기의 효과를 인정하여 동일한 분쟁을 다른 절차에 회부하는 것을 중복제소로 금지한다. 이러한 법리구성은 선택적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경우 그대로 적용되어도 좋을 것이다.

IV. 맺음말

뉴욕주가 채택하고 있는 무과실보험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상 손해에 관하여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불법행위책임의 법리를 수정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신속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과실보험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뉴욕주에서 자동차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에 관하여는 의료기관에 무과실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기만 하면 되고, 이후 치료비에 관한 문제는 의료기관과 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금청구에 관한 문제로 해결된다.

무과실보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입된 중재는 당사자간의 중재합의가 아닌 법률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중재신청권을 선택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이나,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에 재심중재를 도입하여 2단계의 이의제기절차를 두고 있는 점이나, 재심중재판정금액이 미화 5,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나 전형적인 중재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매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무과실보험 중재의 중재절차는 소액사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절차의 신속성을 강조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뉴욕주의 무과실보험 중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무과실보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중재의 법리를 수정하면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제도화하고 있다.

무과실보험 중재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무과실보험이라는 분야와 관련이 있고, 또한 독특한 중재 매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무과실보험 중재에서 채택하고 있는 매커니즘

은 우리나라에서 중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선택적 중재신청권은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논란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보험분야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한된 범위의 분쟁분야에 대해서는 무과실보험 중재시스템을 참고하여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노일석, “NO-FAULT 자동차보험”, 「보험법연구」, 제3권, 보험법연구회편, 삼지원, 1999.
-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1.
- 박세민, 「자동차보험법론」, 세창출판사, 2003.
- 양병희외 8인, 「주식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 2006.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보험·해상법」, 제8판, 박영사, 2008.
- 최준선, 「보험법·해상법」, 제4판, 삼영사, 2009.
- AAA, “News from the AAA’s New York State Auto Insurance ADR Center”, No-Fault Notes, Vol. 2, 2011.
- Jeffrey F. Ghent, “Validity and Construction of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Plans”, 42 American Law Reports 3d 229, 1972.
- Louis B. Cristo, “Litigating the No-Fault Serious-Injury Threshold”, 59 American Jurisprudence Trials 347, 1996.
- Mitchell S. Lustig, Jill Lakin Schatz, “A Defense Lawyer’s Guide to No-Fault Litigation in New York State”, 79-OCT New York State Bar Journal 40, 2007.
- Skip Short, “No-Fault Recovery Rights: Subrogation, Liens & Intercompany Arbitration”, 66-Jan New York State Bar Journal 22, 1994.
- Thomas J. Goger, “No-Fault: right of insurer to reimbursement out of recovery against tortfeasor”, 69 American Law Reports 3d. 830, 1976.
- New York Insurance Law §51 (The No-Fault Law, Comprehensive Motor Vehicle Insurance Reparations Act).
- New York State Insurance Department Regulation No. 68-D (11 N.Y.C.R.R. §65-4).
- AAA’s Rules for Arbitration of No-Fault Disputes in the State of New York.
- <http://nysinsurance.adr.org>, 30 January 2012.

ABSTRACT

Ji-Ho Kim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s a statutory scheme to provide automobile accident victims with compensation for certain expenses arising from personal injuries occurring in car accidents. New York State has enacted No-Fault Law to ensure that the injured in automobile accidents be paid rapidly by their own insurance company for medical expenses, lost earnings regardless of fault, replacing common law system of reparation for personal injuries under tort law. Its primary purpose is to facilitate compensation without the need to exhaust time-consuming litigation over establishing the existence of fault and the extent of damages.

No-Fault Law allows arbitration as a method for settling the no-fault insurance disputes. No-fault arbitration, however, differs in a significant way from general arbitration system. First, No-Fault Law provides the parties with the option to submit any dispute involving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to arbitration. Second, no-fault arbitration attempts to speed its procedure incorporating various methods. Third, the parties are required to seek review of arbitral awards by master arbitrator prior to seeking court's review. Fourth, the parties have right to bring *de novo* action in court if master arbitrator's award exceeds \$5,000.

Given the current state of law in Korea, it may not be easy to introduce no-fault arbitration system into Korea in the context of automobile insurance disputes settlement as its law has a long-established reparation system based on tort liability and no-fault arbitration system has its own features that differ from general arbitration system. Nonetheless, it could be suggested that no-fault arbitration be introduced in other fields which require speedy dispute resolution and a third party's decision to settle the disputes. The optional right of submitting disputes to arbitration as provided by No-Fault Law of New York State may offer a ground to support the effectiveness of an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